

‘초상권 손해배상청구 조정’ 단상(斷想)

최 충 응

서울중재부 중재위원, 경희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그 동안 맡았던 ‘초상권’ 관련 손해배상청구 사례 3건을 떠올려 보면서 해당 조정업무에 대한 단편적인 생각에 잠겨 봤다.

첫 번째 사례는, 동일 신청인이 두 언론사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조정신청이었다. 지난 4월, 여의도 윤중로 벚꽃 축제가 한창일 때 여의도에 직장을 둔 신청인이 동료들과 점심 식사 후 귀사 중 직장 여자동료와 윤중로를 걷고 있는 모습을 피신청인인 A 언론사가 촬영하여 마치 다정한 연인이 거닐고 있는 장면인 것처럼 바로 그 다음날 아침 지하철 일간지와 각종 포털사이트에 사진을 게재했다. 특히 촬영 당시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카메라에 부착된 A 언론사 스티커를 보고 곧바로 어떤 상황인지를 인지하고, 신청인은 가정이 있는 기혼자로서 오해의 소지가 있고 또 개인적으로 신문이나 인터넷에 얼굴이 오르는 것이 싫다는 거부사실을 몇 번이고 전달했다. 그러나 이미 보도된 사진을 신청인의 아내와 처가 식구들이 모두 보았으며 사진이 주는 이미지 때문에 심각한 부부싸움에 가정불화로 부부사이 신뢰에 금이 가고 친지 가족과 특히 처가 가족들에게 신청인의 이미지가 심하게 손상을 입게 되어 지금까지 가족들과의 관계를 위해 노력해 왔던 모든 것들이 일시에 무너져 버렸다는 것이다. 더구나 직장 내에서도 많은 동료들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어 곤혹스러운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며 명예훼손과 심대한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음을 이유로 3백 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리고 동일 신청인이 제기한 또 하나의 조정 신청은 앞의 피신청인 A 언론사와 자료협약관계를 맺고 있는 D 언론사가 A 언론사로부터 동일한 사진자료를 제공받아 자료사진의 인물을 보다 크게 확대하여 ‘벚꽃길 따라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것에 관한 신청이었다. 신청인은 사진이 확대되어 피해가 더 커졌다는 이유로 D 언론사에는 5백 만 원을 청구했다. 조정 결과, 사진을 촬영한 피신청인(A 언론사)은 1백 5십 만 원으로 합의 조정되고, D 언론사는 4백 만 원의 직권조정결정에 동의하게 되었다.

두 번째 사례는 신청인이 모델 활동을 하는 여성 연예인으로, 지상파 TV 연속 드라마에 단역으로 촬영을 했다. 그런데 드라마 촬영 전에 프로필 면접을 위해 매니저를 통해 전달한 사진이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인 성(性)만 바뀌고 이름은 그대로 자막으로 처리되어 해당 TV 드라마에 전시되는 소품으로 사용됐다. 실제 TV드라마에 소개된 장면은 불과 1 ~ 2초 정도의 짧은 장면이었지만 그 사진은 신청인이 코 성형수술 하기 전의 사진으로, 앞으로 모델 활동에 지장이 있어 불면증 등 피해가 많다는 것이었다. 신청인은 재방송 및 인터넷 홈페이지의 다시보기 VOD에 신청인이 나온 부분을 삭제할 것과 함께, 2백 만 원의 손해배상청구를 신청했다. 조정 결과는 6십 만 원으로 합의가 되었다.

세 번째 사례는 아마추어 마라토너인 신청인에 관한 것으로 스포츠 전문 월간지인 피신청인이 “자외선 극복여부가 가을대회 성적을 좌우한다”라는 마라톤 관련 기사를 내보내면서 신청인이 옷통을 벗고 달리는 장면의 사진을 게재했다. 신청인이 옷통을 벗고 달리는 독사진 아래 ‘여름에 벗고 달리는 것은 피부화상을 초래한다’라는 캡션을 붙여 신청인의 명예와 초상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신청인은 자신의 동의도 없이 게재된 부정적인 이미지의 사진보도로 인해 마라톤 동호회 회원과 직장 동료들로부터 놀림과 야유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명예훼손과 정신적 피해로 3백 만 원을 청구했다. 조정 결과 5십 만 원의 손해배상과 피신청인이 발간하

는 스포츠 잡지 1년 무료 정기구독권을 신청인에게 주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 졌다.

언론중재법은 제30조 1항에 '언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나 인격권 침해 또는 그밖에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규정하여 이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도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대상으로 함으로써 언론중재제도를 통한 언론 보도 피해의 실효성 있는 구제를 도모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언론중재법 제5조 1항에는 '언론은 생명·자유·신체·건강·명예·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초상·성명·음성·대화·저작물 및 사적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를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초상권은 사람이 자신의 얼굴에 대하여 갖는 일체의 권리를 말한다. 이는 성명·초상·경력·이미지 등 개인의 고유한 속성인 인격적 징표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서 사생활권으로부터 유래한 권리다. 초상권의 내용 으로서는 얼굴이나 기타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 함부로 촬영 또는 작성되지 아니할 권리로서 촬영·작성 거절권이다. 그리고 촬영된 초상 또는 작성된 초상이 함부로 공표·복제되지 아니할 권리로서의 공표거절권인 것이다. 또한 초상이 함부로 영리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할 권리로서의 초상 영리권 또는 초상 재산권 등이 있다. 본인의 동의 없이 초상을 촬영하거나 개인의 고유한 이미지를 사용하는 행위는 명백한 초상권 침해다. 공표거절권의 경우 허락을 얻어 촬영된 영상이라도 이를 함부로 공표하는 행위나 일단 공표된 영상이라도 다른 목적에 사용되는 행위 역시 초상권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된다.

2006년 1월부터 8월 15일 현재까지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가운데 초상권 관련 사건은 17건인데, 합의가 13건, 직권조정이 1건, 불성립이 2건으로 합의성립율은 82.3%였다. 이 기간 중 전체 손해배상청구 총 185건 중 취하가 91건, 조정 불성립이 42건, 합의가 32건으로 나타났다.

언론중재법 시행 이후 2005년까지의 손해배상과 정정이나 반론보도청구가 병합된 정정·반론손배청구사건 에서 실질적인 합의성립율이 48.6%라고 볼 때, 정정보도나 반론보도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이 청구된 경우에 손해배상은 취하 또는 불성립으로 처리하고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는 합의를 유도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으로 이해될 것이다. 이에 비해 초상권 사건은 거의 정정·반론보도가 수반되지 않고 바로 손배청구로 이어지므로 조정에서의 합의율이 높을 수 있다. 특히 초상권이 지니고 있는 특성상 가시적인 명백한 불법행위의 언론보 도로 피신청인 입장에서는 피해갈 틈이 없는 것 역시 합의율이 높은 배경이기도 하다.

언론중재법 제30조 2항에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액의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그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뿐 아니라 재산적 손해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재산적 손해 인정은 통상적 영업이익과 보도 이후 피해로 인한 매출수익 등을 비교하여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방법으로 손해액을 산정키 위한 증거조사가 필요한 요건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정신적 피해로 인한 위자료 산정의 경우, 사안의 상황적 논리를 어떻게 재단하여, 탄력적으로 인정하고 합의를 유도해 낼 것이냐는 점은 난제이기도 하다. 법정에서의 소송비용과 무료로 중재 조정되는 사례와의 대비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본격적인 디지털 시대로 접어 들어 종이신문과 전자신문의 벽이 무너져가고, 통신과 방송의 융합현상으로 이동형·개인형의 DMB방송·IPTV·Wibro(무선인터넷) 등이 활용되는 유비쿼터스 시대가 전개되고 있다.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 뉴미디어에 비해 과부족한 콘텐츠 동영상은 UCC(User Created Contents, 사용자 제작 콘텐츠)의 활용을 통해 해결하자는 대안이 떠오르면서 관련 포털들의 경쟁이 치열하고, 한편에서는 이른바 '나만의 방송국' 설립마저 서두르고 있기도 하다. 더구나 '모든 시민은 기자다'라는 기치아래 시민 참여 저널리즘으로 자리 잡아 가는 인터넷 신문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과연 다매체·다채널 환경과 시민 참여 저널리즘 시대에 초상권이 얼마나 보장되고 지켜질 것인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